

의안번호	2201639
의 퇴 인	최은석의원
회 답 일	2024. 9.13.
추 계 번호	24D169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¹⁾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100만원, 2030년 5,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2억 1,000만원(연평균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제보조비 지원 (안 제54조의6 신설)	17	20	23	27	31	118	24
장례서비스 지원 (안 제54조의7 신설)	13	16	18	21	24	92	18
합계	31	36	41	48	54	210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이 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의6 신설(장제보조비 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재량규정
2	제54조의7 신설(장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재량규정 의무규정
3	안 제74조제2항 신설(위임 및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의3제1항 ²⁾ 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2) 이 법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령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4조의6 신설(장제 보조비 지원 등)	○	
2	제54조의7 신설(장례서비스)	○	
3	안 제74조제2항 신설(위임 및 위탁)	×	미대상 보훈보상대상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가능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제보조비 지원(안 제54조의6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장제보조비’ 사업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아니한 경우³⁾,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4억 4,200만원(2,210명×20만원)임

3)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중 사망자 수는 아래와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인 15.1%를 추계기간 동안 적용

[표 2]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인원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21~2023 연평균증가율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인원	19	29	43	45	57	193	15.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지원단가) 장제보조비 지급단가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사업 상의 단가인 20만원을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추가재정소요)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1억 1,800만원으로 추정

[표 3]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망자(명, A)	87	100	115	133	153	
장제보조비(만원, B)	20	20	20	20	20	
소요비용(백만원, A×B×C)	17	20	23	27	31	1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례서비스 지원(안 제54조의7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본 추계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
 - (현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20만원 이내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22억 3,500만원(1,016명×2,200천원)임

- (대상자) [표 3]에서 추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중 사망자 수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7%(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적용하여 추정
 - － 보훈보상대상자 저소득층 비율(기준중위소득 50% 이하) 6.7%는 국가보훈부에서 3년마다 수행하는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336쪽 참조
- (지원단가) 장례서비스 지급단가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220만원(2024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가재정소요)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 향후 5년간 9,200만원로 추정

[표 4] 생계곤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망자(명, A)	87	100	115	133	153	
생계곤란 사망자(명, B×6.7%)	6	7	8	9	10	
장제보조비(만원, C)	220	225	229	234	239	
소요비용(백만원, B×C)	13	16	18	21	24	92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원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 간 총 2억 1,000만원(연평균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제보조비 지원	17	20	23	27	31	118	24
장레서비스 지원	13	16	18	21	24	92	18
합계	31	36	41	48	54	210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